

第103回  
國會  
(閉會中)

# 憲法改正審議特別委員會會議錄 第22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0年 5月14日(水)

場 所 憲法改正審議特別委員會

## 審査된案件

1. 憲法改正案 ..... 1面

(10時27分 開議)

○委員長 金澤壽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次 會議의 開議를 宣布합니다.

### 1. 憲法改正案

○委員長 金澤壽 議事日程 第1項 憲法改正案을 上程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議題를 딱 잘라서 뭐라고 올리자를 못하고 좀 抽象的으로 議事日程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하던 얘기를 계속을 더 하실 분은 發言을 하시고 또 기타문제도 發言하실 분은 發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載熙委員.....

○朴煥鍾委員 大體討論입니까?

○委員長 金澤壽 討論입니다.

○崔炯佑委員 議事進行 發言주세요.

○委員長 金澤壽 조금 계세요. 여기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南載熙委員 發言하세요.

○南載熙委員 서두에 發言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會議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速記錄을 보니까 速記錄에는 상당히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른바 經營者들에게 「비후스테인크」를 대접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委員長말씀으로 “委員長과 與野幹事가 초청을 받아서 社長室 옆에 있는 附屬室에서 「비후스테인크」를 대접을 받았다” 분명하게 速記錄에 있는데 아마 어제 委員長님이 제가 보기는 분명히 發言하신 것같은데 이 公開會議에서..... 오늘 아침에 某放送을 들으니까 南載熙委員이 “「로비」

를 한 바도 없다 響應을 받은 바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다가 委員長이 “「비후스테인크」를 대접받았다 하니까 南載熙委員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고개를 수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공공연하게 放送이 나와서 마치 제가 「비후스테인크」를 먹고 「비후스테인크」를 안 먹은 양 거짓말을 한 것으로 報道가 되는데 政治人에게 있어서 이 엄숙한 憲特에서 더군다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의 人格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 公開된 場所에서 委員長이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南載熙라는 세 글자의 이름을 가진 委員이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몰아 붙이는 상황이 됐느냐 그래서 委員長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후스테인크」인지 무엇인지 대접을 받을 때 참가했던 사람을 具體的으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러한 憲特委員들의 지금 묘하게 왜곡 報道되는 일이... 진실이 報道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身上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委員長 金澤壽 거기에 대해서 나로서 答辯을 해야 될 義務가 있습니다.

어제 내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委員長을 포함해서 與野幹事 그렸으니까 그 자리에는 南載熙委員이 불행하게도 幹事が 아니어서 그 자리에 參席하지도 못했습니다.

○崔炯佑委員 議事進行 發言주시시오.

○委員長 金澤壽 崔炯佑委員 發言하십시오.

○崔炯佑委員 방금 委員長께서 오늘 憲法特委의 議事日程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與圈 野圈의 해결되지 못하는 案件에 대해서 뭐 어떤 어떤 점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내놓고 거기에 하나하나 문제를 다루고 또 未解決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與野團에 모임을 가지고 그 解決方案을 모색하는 그러한 會議進行을 해야지 委員長 말씀대로 未解決된 점을 無條件 發言 하라고 한다면 會議進行上에 여러가지가 어려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委員長께서는 與野團에 未解決된 問題點을 이 자리에 提示해 두고 무엇보다 먼저 處理해야 되겠다는 案件을 上程하는 것이 會議進行上 또 處理하는 方法의 妙策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委員長께서는 本委員이 얘기한 바와 같이 문제된 案件을 통틀어서 내놓고 무엇보다 먼저 論議하겠다는 그런 方法으로 議事進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韓柄來委員 다시 補充해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澤壽 韓柄來委員 發言하십시오.

○韓柄來委員 방금 崔委員께서 말씀을 했습니까 다마는 거기에 補充하는 議事進行입니다.

오늘 委員長께서 막연하게 抽象적으로 討論이나 하자 이랬는데 저희들이 결정한 日程이 15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막연한 討論보다는 基本權小委에서 各 3個 小委員會에서 합의가 되고 우리 委員會에서 異議없이 接受된 各條文에 대해서는 다시 討論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委員會에서 합의가 안되었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委員長께서 하나 하나 上程을 시켜서 討論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되어서 處理되는 것은 합의해서 處理를 하는 方向으로 議事進行을 해주는 것이 效率적인 議事進行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討論을 하다가 합의가 안되는 것은 나중에 委員長과 幹事들이 다시 調整을 해서 上程을 시켜 來日 그 문제를 處理하더라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未處理된 事項 하나하나를 委員長께서 上程시켜서 討論을 하고 그 자체를 여기에서 해결하는 이런 方式의 議事進行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議事進行의 發言입니다.

○委員長 金澤壽 여태까지는 與野 幹事會議에서 全體會議에 들어가기 전에 議事日程을 대체로 합의를 보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慣例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委員長을 위시해서 與野 幹事가 議事日程을 딱 꼬집어서 이것을 上程할 형편이 못되어 있으니 오늘 全體會議에서 討論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스코우프」를 해갖고 論議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結論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가 말하기를 司會棒을 갖고 두드리는 「마스코트」밖에 안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방 이러한 문제에 대해가지고 먼저 하자 하고 얘기가 났습니까 未決된 事項은 과연 뭐가 남아 있는냐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與野 幹事會議에서 議事日程에 대해서 합의를 못 봤으니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停會를 해가지고 與野 幹事들한테 일임을 하거나 方法은 있겠는데 어제 論議하였던 하루 종일 論議했던 4·19와 5·16問題가 繫留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勞動三權에 대해서 거의다 얘기는 돼지만 한번 더 全體會議에서 舉論하자 그 문제가 남아 있고 選舉年齡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대체로 그러한 等屬의 問題點이 現在 오늘과 내일 사이에 우리가 전번 全體會議에서 決定하기에는 15일까지 마무리를 다 짓는 것을 前題로 하고 우리가 會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現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러한 등등의 일들이 議案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합의하기에는 14 15 兩日間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討論해 나가자 그러한 前提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韓柄來委員 어저께 言論問題도 오늘 再論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澤壽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朴海充委員 즉석에서 지금 議事進行 말씀하신 분 취지를 생각해서 여러분 諒解하시면은 신속히 議事進行을 처리하기 위해서 몇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憲法前文 問題를 討論하다가 결론을 못냈습니다. 이래서 대체적으로 順序로 보아가지고 未合意된 것이 줄거리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오늘 討論까지의…… 저의 意見입니다.

니다.

첫째 어제 未結論 狀態에 있는 憲法前文하고 그 다음 두번째 選舉年齡 세번째 編輯獨立權 네번째는 勞動三權 이런 순위로 해가지고 議事進行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면은 그렇게 진행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꾸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李必善委員 議事進行 發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澤壽 이 문제에 대해서 입니까? 하세요.

○李必善委員 本委員이 알기에는 提案說明이 1次 끝났고 提案說明으로 인해서 第1讀會가 지금 완전히 마무리를 안지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選舉關係 과연 大統領選舉나 國會議員選舉를 별도로 하는 것이 옳으나 안옳으나 이것도 議決이 안돼 있고 이것을 의결하는데 있어서 同時選舉 主張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兩黨의 黨論을 中心으로 한 것이 아니라 黨을 초월해서 國家的인 次元에서 또 論議를 할 수 있는 分野도 있기 때문에 會議進行을 慣例에 의해서 질서있게 1讀會를 끝낸 다음에 2讀會를 우리가 일단 건너서 3讀會에 가서는 字句修正程度로 해가지고 이 國會 憲法 單一案을 作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간의 會議 順序고 慣例이니만치 그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에 와서 몇가지 머리에 떠오르는 重要事項이겠지요. 이것을 가지고 論議하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憲法은 國家 百年大計를 위한 基本法이고 또한 母法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細部의으로 보다 더 신경을 써서 理想的인 憲法을 確定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本委員은 보아지기 때문에 慣例에 의한 會議進行法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司會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澤壽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훌륭한 憲法을 만들기 위해서 며칠을 가진 몇달을 가진 여러분들 發言權 을 작정을 했습니다.

委員長도 信念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 主張같이 우리나라 憲法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憲法을 만들기 위해서 몇달이라도 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 理解할 수 없는 것이 大統領選舉에 대해 갖고는 權力構造에 있어 갖고 憲法附則에 있어서 大統領選舉와 國會議員選舉는 1次的으로 國民이 하는 選舉로써 다 합의가 됐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내 갖고 또 討論하자고 하면 時間이 좀 많이 걸릴 것이고 新民黨委員만 國會議員이 아닐진대 與黨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委員長으로서는 司會를 보는 「마스코트」니까 發言權 달라고 하는 대로 1年까지도 드릴테니까 會議를 합시다.

(場內騷亂)

(「發言주세요」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이오!」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이라도 먼저 들어온 분에 優先權이 있으니까 朴容萬委員 發言하세요.

○朴容萬委員 좀 더 흥분들 하지 않고 냉철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新民黨委員 사이에도 약간의 見解 差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會議를 좀더 能率的으로 질서 있게 進行하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잠깐동안만 停會를 해 주실 것을 委員長께 정식으로 要請을 합니다.

○委員長 金澤壽 어떤 이유로 停會입니까? 委員長이 남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朴容萬委員 會議를 보다 더 能率的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동안 停會해 주실 것을 要請합니다.

○委員長 金澤壽 能率的으로 하기 위해서 停會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朴容萬委員 예.

○委員長 金澤壽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43分 會議中止)

(11時38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澤壽 議事進行을 하겠습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進行을 生産的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그 동안에 野圈은 野圈대로 與圈은 與圈대로 진지하게 討論을 해가지고 여기에 案이 幹事들끼리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먼저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編輯權獨立問題하고 그 다음에 勞動三權 그

다음에 選舉年齡 그 다음에 憲法前文 거기에 安保에 관한件 이래서 討論은 그러한 順序대로 한다…… 그런데 이 쪽에는 없었지만 이 쪽에서 하나 붙어 왔으니가 安保에 대해서 討論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議事日程 順序대로 議事를 進行하겠습니다.

蔡汝植委員 發言하세요.

○蔡汝植委員 어쨌든 늦게나마 議事日程이 분명히 進行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編輯 編成의 獨立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議事進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된 그 基盤이 이것은 여기에 있는 데서 가장 與野 다 제일 빨리 合意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없는 가운데 그런 무슨 생각이 갈아서 이것이 빨리 議事日程 第1番으로 나온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 編成 編輯이 獨立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憲法明文에 規定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며칠전 본 자리에서 좀 장황하리만치 길게 說明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되풀이 하지 않고 이것은 긴 討論없이 그저 그 分科委員會에서 第2分科委員會에서 당초 저희들한테 油印物을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油印物에서 그 編輯과 編成이 獨立이 되는 그러한 成案이 되어가지고 油印物이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決定하는 데로 이렇게 意見を 모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異論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委員長 金澤壽 發言하십시오.

○朴煥鍾委員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憲法特委가 全員合議制의 運營의 特質 때문에 이 18條3項 後段에 編輯 編成權 獨立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 지난 5月9日 20次 會議에서 本委員이 5月14日 오늘 會議에서 再論한다는 條件으로 그런 合意를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날 委員長님께서 速記錄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一部 委員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再論한다는 그 당시의

그 合意 諒解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條1項의 言論自由라고 하는 것은 狹義로 보면 國民의 表現의 自由를 保障하는 規定입니다.

그러나 지금 現代國家에 있어서는 國民의 알 權利…… 表現의 自由라는 그런 면을 떠나서 國民의 알 權利라는 그러한 側面에서 볼 때에 18條1項의 條文은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憲法學者인 金哲洙 教授라든지 大多數의 學者들이 알 權利는 廣義로는 言論自由條項 이른바 18條1項에 포함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幸福追求權이라는 좀 포괄적인 權利의 一部로 이 알 權利가 말하자면 거기서 導出이 되고 설명이 된다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보아가지고 18條3項에 編輯權과 編成權의 독립을 保障한다고 저희들이 小委에서 넣은 것은 알 權利의 기초가 되는 情報 또는 資料 이것의 客觀性 維持 이러한 側面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條文의 文脈의 성질을 보면 제한된 言論機關의 權益伸張面 그 쪽에서 볼 것 같으면…… 國民의 알 權利의 資料를 제공하는 言論機關의 입장에서 보면 言論機關의 權益伸張이라 할까 保護 이런 側面에서 論議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당초 論議한 것은 그 側面이 아니고 國民의 알 權利의 保障側面에서 보아가지고 그 알 權利를 완벽하게 保障하는 方法으로써 그 條文을 설치하자 하는데 意見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記者協會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決議文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대체로 그 흐름이 言論機關 側面에서 본 權益面이라 할까 이러한 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委員會에서는 그러한 면보다도 國民의 알 權利를 완벽하게 보장한다는 그러한 側面에서 이 문제가 再論이 될 필요가 있다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體制上으로 18條3項에 넣는 것이 가령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은 다시 考慮하더라도 당초 우리 基本權小委에서 설치의 精神은 그러 했던 것이니까 그러한 趣旨가 반드시 살려지는 그러한 方向으로 再論이 꼭 있어야 되겠다 살려져야 되겠다 하는 本人의 立場을 말씀드리는데 바입니다.

○委員長 金海壽 南載熙委員께서……

○南載熙委員 지금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아까 蔡汶植委員께서 요전번 20次 會議에서 자세히 말했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날 상당히 우리 朴海充幹事가 司會보시면서 너무 길다 해서 注意를 받을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자세히 그 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뭔가 論理가 충분히 전개된 후에 말을 맺어야지 한두마디로 할 수가 없어서 그 때 우리 朴海充幹事가 注意까지 주었는데 따라서 저도 蔡汶植委員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그날 發言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더 얘기할 意思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朴燦鍾委員이 지금 金哲洙서울法大 教授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제가 言論關係 公聽會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많이 다녀왔고 읽어도 보았는데 거기서 金哲洙教授나 또는 南時旭 東亞日報論說委員이나…… 이런 이름을 들자면 한이 없읍니다마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 言論關係에서 先進立法이라 하는 것이 지금 朴燦鍾委員이 얘기한 알 權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 發言에 代案으로 西獨憲法 5條에 있는 알 權利問題를 우리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크리스찬 아카데미」案을 제가 그날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案 8條7項을 보면 「모든 國民은 알 權利 읽을 權利 및 들을 權利를 가진다」 이렇게 「크리스찬 아카데미」案에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일부 委員들님께서 알 權利라는 것이 좀 생소하게 들려서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西獨憲法 5條를 보면 一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情報源으로부터 國民들이 충분히 들을 알 權利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西獨憲法 條項입니다. 그래서 美國에서 英語로 말씀드리어서 죄송합니다. 翻譯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리덤 어브 인포메이션 액트」(freedom of information act)라는 것이 알 權利에 下位立法으로 되어 있는데 그 下位立法에 따라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言論機關…… 특히 言論機關이지요. 또는 一般國民이 政府側에 대해서 무슨 무슨 資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 그래 正式으로 申請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限 그

것을 거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美國에 어느 學者가…… 그것은 個人도 됩니다. 學者가 美國 國務省에 대해서 韓國과 美國間에 安保條約이 締結될 당시의 資料를 提示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美國 國務省에서는 소위 秘密維持의 時效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公開를 했고 우리가 놀랍게도 그 公開된 資料속에서 釜山政治波動 당시와 또 休戰協定 당시에 李承晚博士가 하도 완고하니까 美軍이 韓國에 대해서 두차례 「쿠데타」계획을 작성했다 그래서 英語로 이것이 「에버 레디 플랜」(ever ready plan)이다 해가지고 釜山政治波動 당시 또 休戰協定 反對하니까 李博士를 어디 시골로 誘引해서 監禁해 놓은채로 釜山政治波動 때는 張澤相總理를 어떻게 大統領代行으로 해가지고 한다 가명 그런 것이 「프리덤 어브 인포메이션 액트」에 따라서 公開된 資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연 그러면 알 權利의 憲法規定을 두어가지고 下位法인 말하자면 「프리덤 어브 인포메이션 액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느냐? 현재 日本에서도 試案만 나왔읍니다. 그 法에 대해서 試案이 나왔을 단계이지 그 法이 日本에서 制定이 못 되었습니다. 下位法이……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日本보다도 安保的인 사항이 더 많아서 下位法의 문제는 별도로 論議해야겠습니다마는 이런 世界的인 言論自由에 대한 趨勢는 그리고 一般學界나 또 言論界에서 研究者들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바는 역시 알 權利다 따라서 朴燦鍾委員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成文化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에서 제 생각같아서는 요전에 말씀드린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알 權利의 條項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모든 國民은 알 權利 읽을 權利 및 들을 權利를 가진다」 이 條項을 8條1項에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그 다음에 「言論의 自由에는 알 權利 읽을 權利 및 들을 權利가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案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것을 알 權利 條項을 우리나라 現段階에서 과연 넣어야 되느냐? 先進된 條項이라고 해서…… 與否는 여기서 아마 판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요전번에 速記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代案으로 提示한 문제이고 朴委員이 提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립니다.

○蔡汝植委員 제가 한마디만 追加하겠습니다. 자꾸 南載熙委員의 아주 깊은 論理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자꾸 反論을 해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 나는 이 알 權利 이것 뭐 아주 外國에 소상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까. 나는 알 權利 또는 들을 權利 읽을 權利의 側面과 지금 우리가 論議하고 있는 그 編輯과 編成의 獨立의 側面이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編輯 編成의 獨立은 發行者와 企業主間의 相關關係에서 우리가 이 側面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것 完全是 아닙니다. 나는 물론 國民의 알 權利 들을 權利하고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나는 直接的인 것은 國民의 알 權利의 側面도 있기는 합니다. 나는 보다 直接的인 것은 企業의 發行權과 編輯 編成權과의 相關關係에서 우리가 論議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次元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써 알 權利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憲法에 明示되고 우리가 또 어떤 間接적으로 明示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써 지금 論議가 되고 있는 編輯과 編成의 獨立을 지금 알 權利하고 代替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論理의 비약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結論만 말씀을 드리면은 第2分科에서 미리 훌륭하게 合意되어온 그 原文대로 그 趣旨대로 그대로 살린다. 그것은 요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는 그것은 지금 說明해 주신 側面하고는 약간 다른 側面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油印된 原案대로 編輯과 編成이 獨立되어야 한다. 하는 그것을 그대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委員長 金澤壽 그 다음에는 發言申請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金守漢委員 發言해 주세요.

○金守漢委員 이 문제는 대충 整理가 된 것 같습니다. 한때 南載熙委員에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趣旨는 대단히 좋습니다. 나는 小委員會 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結論입니다. 지금 南委員이 누누이 西獨憲法을 援用하시면서 말씀하신 가령 읽을 權利 들을 權利 또는 여러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데 이런 諷刺하는 社會 情報속에서 우리가 읽고 듣고

또 하는 이러한 알 權利 이런 것을 合理的으로 濾過 集約해서 國民에게 이제 말씀한 그러한 內容의 것을 充足시켜 주는 유일한 媒介體가 言論이다. 이것입니다. 窮極의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言論을 통해서 이제 南載熙委員이 말씀한 들을 權利 읽을 權利 하는 모든 權利가 充足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韓國的 現實에 있어서 이러한 國民의 基本的인 權利를 充足시켜 주는 唯一無二한 最大公約數의 人 媒介體요 또 最高의 手段이요 方法인 言論이 經營과 編成이 分離되지 못하는 데서 여러가지 지금까지 國民의 그러한 權利가 유린되어 왔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憲法을 制定하는데 있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실현시켜야 되겠다. 예컨대 지금 이야기가 좀 많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資本과 經營이 分離되지 못하고 最近에 일어나고 있는 일부 個人 企業體에 있어서 보는 것과 같은 소위 個人 家族會社의 運營의 여러가지 惡性的인 實態 이러한 것이 지금 是正되고 있습니다.

學團단 하더라도 財團과 學校教育의 실제 運營權의 分離 이런 문제가 지금 學團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이것도 是正되어가고 있는 狀況인데 言論도 이제 이러한 歷史的인 추세와 또 正當한 그러한 狀況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이제 나는 小委員會에서 말한 이 案대로 編輯과 編成의 獨立은 保障한다 하는 것으로 하면은 이제 南委員이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것이 나는 충분히 充足이 된다. 하니까 이것을 또 煩多하게 다시 이것을 條文을 새로 손을 대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더 험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으니까 小委員會 原案대로 「編輯과 編成의 獨立은 保障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蔡汝植委員이 動議한대로 그렇게 해서 넘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澤壽 에 韓柄來委員 말씀하세요.

○韓柄來委員 이 부분에 대한 提案者로서 아마 趣旨 이 條文이 이 規定이 왜 나왔는지 趣旨를 조금 달리 理解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說明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朴燦鍾委員과 南載熙委員께서 編輯의 獨立規定을 알 權利規定으로 表現을 바꾸어서 檢討할 必

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알 권리는 被報道者의 權利입니다. 國民의 權利입니다. 이 編輯의 權利는 報道者의 權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主體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主體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條文整理를 하다 보면 本質을 離脫할 危險性이 있다 그러면 왜 굳이 原語의 해석을 編輯이라는 해석을 기피하는 根本的인 바탕에서 外國의 憲法들을 檢討한다면 編輯의 自由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成立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編輯의 獨立을 우리 憲法에서 굳이 넣어야 하겠다는 것은 世界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 取材의 自由 報道의 自由 言論의 自由 없는 民主憲法 없습니다. 그 바로 取材의 自由 報道의 自由 그 中間過程에서 取材 編輯 報道 이렇게 分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世界的으로 統治能力이 우수한 權力機構가 있어가지고 간교한 權力의 간섭 수단으로 바로 編輯에다가 간섭을 해가지고 實質的인 言論을 박탈하는 이러한 行爲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中間段階의 編輯에 간섭을 침해 말씀으로 인해서 言論의 自由가 實質的으로 박탈되는 이런 不幸을 막아 보자고 해가지고 이 條文이 登場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外國에는 없었느냐? 이 바로 編輯은 엄격히 말해서 取材 編輯 報道라는 企業活動의 自由를 간섭하는 것입니다. 外國에서 民主主義하는 나라에 企業의 活動을 간섭하거나 혹은 企業活動을 制限하는 것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民主國家에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간교한 방법으로써 우리나라의 言論의 自由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憲法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두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本質的으로 또 權利主體面에서 그 手段方法面에서 이 國民의 알 權利와 이 編輯의 權利 다시 말해서 取材의 自由 報道의 自由 權利 전혀 다른 범주의 것이다 전혀 다른 범주의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論難이 된다면 이 編輯의 獨立을 보장해야 한다는 根本精神이 또 박탈될 危險性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規定을 둔 趣旨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說明을 드리면서 우리 基本權小委全體會議에서 合意 본 그 條文을 살리는 방

향으로 오늘 委員會에서 決議하는 것이 適當하다는 見解를 밝히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澤壽 조금 계십시오. 發言順序가 알입니다 아까 高在濟委員 먼저번에…… 양해를 해 주시면 崔炯佑委員 마치고 發言順序가 아까 먼저 들어왔으니까 崔炯佑委員 하시면 양해 하시겠습니까?

○高在濟委員 좋아요. 먼저 하세요.

○委員長 金澤壽 그러면 崔炯佑委員 發言하세요.

○崔炯佑委員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現實을 살피고 과거를 이 자리에서 吟味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韓國記者協會에서 또는 國會出入記者 一同이 編輯과 編成의 自由를 保障해 달라고 하는가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南載熙委員께서는 外國의 先例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言論의 自由 保障은 財閥에서 自由保障이 되어야만이 言論의 진정한 自由保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經營者가 新聞社를 經營하는 사람들이 거의 大韓民國의 財閥들입니다. 우리가 勇氣있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記者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國會에서 取材를 하고 또 部處에서 取材를 하고 이것을 각 「메스크」에 보내가지고 그 「메스크」에서 과거에 中央情報部에서 各言論機關에 配置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내라 이것은 내지 마라 이것은 울려라 이것이 施行이 되지 않으면은 經營者에게 만약에 安保라는 하나의 美名下에서 이것을 履行하지 않으면 壓力을 加해가지고 그 記者를 辭表를 提出하게 하고 그리고 또 機關에 잡혀가지고 많은 拷問도 당한 사실을 우리가 否定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 記者協會에서 言論人들이 이 編輯과 編成權을 주장하는 의미를 우리들은 여기에서 심각하게 想起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例를 들어서 外國例를 자주 말씀하는데, 先進國에 있어서 編輯과 編成에 대해서 憲法條文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言論機關은 하나의 어떤 機關에서 配置를 시키가지고 經營主 또는 言論人들에게 그런 拷問을 하고 壓力을 加한 事例가 있습니까? 우리가 日本의 例만 하더라도 新聞社의 株는 한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음대로 運營할 수 없는 株를 配當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

지 않습니까! 만약에 株를 하나 팔더라도 이 사람이 과연 財閥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調査해 가지고 株를 판다는 것도 제가 듣고 또 冊子를 읽어서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大韓民國의 新聞經營者들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記者들이 言論에 使命을 가지고 자기의 全力投球를 한다면 그 記者들은 과연 그 言論機關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 東亞閣委 朝鮮閣委 여러분 한번 想起해 보십시오.

우리가 國民의 알 權利를 주장한다면 言論人들이 마음대로 取材할 수 있는 自由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民主制度化가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統治者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獨裁者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 보장합니까? 李承晚 大統領이 獨裁한다고 했읍니까? 朴正熙 大統領이 獨裁한다고 했읍니까? 결국에는 어떤 統治者가 나와서 獨裁한다고 한다면 經營者와 編輯 編成에 대해서 獨立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날 言論인들이 주장하는 記者協會에서 주장하는 이것은 또 되풀이 될 事實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南載熙委員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先進國家와 같이 言論의 取材를 보장해 주고 또 各 新聞社에 中央情報部의 職員을 보내 가지고 「테스크」에 이것 내라 내지 말아라 또 記者들을 잡아가지고 拷問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民主憲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統治權者가 되더라도 言論인들이 記者들이 자기의 主體에서 사실 그대로 報道할 수 있는 그러한 言論人들의 自律性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編輯 編成에 대해서 마땅히 小委員會에서 合意된 事項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얘기한다면 물론 南委員께서 말씀한 것도 一理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民主制度化가 되어가지고 選舉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꼭 獨裁主義가 된다고도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前例를 봐가지고 우리 한번 솔직히 얘

기합시다. 拷問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事實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實感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意志가 있고 아무리 言論의 自由를 보장할 수 있는 言論의 使命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中央情報部에 한번 끌려가가지고 맞아 보십시오. 그 다음날은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만약에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言論의 使命을 한다면 그 다음날은 辭表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불행한 事態를 歷史속에 다시 우리가 가져오지 않는 그러한 意志속에 서라도 이번에는 言論의 使命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機會의 보장을 줌으로 해서 言論人들의 使命과 言論人들의 責任과 言論인들이 國民들에게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런 法의 어떤 허술한 點에서 나의 良心을 팔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各界各層의 社會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機會를 주고 책임을 다 할 수 있고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意味에서도 이번에는 編輯과 編成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意味와 그리고 小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通過된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澤壽 이것이 일단 채택이 될는지 안 될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일이 상당히 막중하고 또 會議時間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점심을 먹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結論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 양해가 되고 해서 全員一致가 되어야 決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生産的으로 잘 進行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意見調整도 하고……

(「委員長! 내가 結論을 내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하는 이 있음)

○金守演委員 委員長! 지금 여기에 대해서 反對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委員長 金澤壽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高在淸委員 말씀하세요.

○高在淸委員 내 나뉘대로 간단하게 結論을 내리겠어요.

지금 18條3項 問題에 대해서 며칠간 우리



가 討論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는 朴  
 煥鍾委員과 南載熙委員 특히 南載熙委員께서는  
 編輯 編成權 獨立問題를 反對하고 계시다가 이  
 것은 알 權利 들을 權利 읽을 權利로 해서  
 이것을 표현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것은 어디까지나 國民의 基本權을 言論의 基  
 本權을 包括的으로 표현한 의미이기 때문에 結  
 論的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하고 우리가  
 지금 基本權小委에서 원래 18條3項하고는 얘  
 기가 완전히 다르다 言論의 基本權을 包括的  
 으로 표현한 의미이고 이것은 18條3項에다가  
 編輯 編成權의 獨立을 하는 것은 이것은 企業  
 主와의 獨立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완  
 전히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結論的으로 말스  
 을 드리면 이것은 무슨 알 權利 들을 權利  
 읽을 權利 이렇게 구차스럽게 넣을 것이 아  
 니라 이것을 넣는다면 8條에다가 插入해도 좋  
 습니다.

그리고 18條3項에다가는 애당초 基本權小委  
 에서 만든 編輯 編成權의 獨立保障 이것으로써  
 족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이상 이 문  
 제를 가지고 무슨 代案이라든가 또는 어떤 案을  
 내어가지고 했었자 編輯 編成權 獨立問題 이  
 것만 들어가면 다 끝난다 이렇게 本委員은 보  
 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國民은 알 權利 들  
 을 權利 읽을 權利가 있어요. 그것하고 이 문  
 제를 別個問題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꼭 插  
 入한다고 하면 8條에다가 插入하고 18條3項  
 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反  
 對討論을 하시는 분이 南載熙委員이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틀간 하시는데 反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完全無缺하게 꼭 나가야 된  
 다. 이렇게 運營이 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  
 러니까 南載熙委員께서 이것을 양해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討論終結을 해서 이것을 接受  
 하는 방향으로 效率的으로 運營하는 것이 어  
 뭇겠느냐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澤壽 내가 議事進行을 좀 해야 되  
 겠습니다. 일을 위해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지  
 금 말을 안 하시고 하는 분들이 全部다가 贊  
 成이나 反對나 하는 것도 다 모릅니다.

또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는  
 데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내  
 생각이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점심 먹으면서 個別的으로 서로 얘기

좀 하고 여기에 오면 全部 다 같이 좋소 이  
 렇게 되어야 되지 말을 안한 분들이라고 해  
 서 贊成하는 것도 아니고 反對하는 것도 아  
 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朴容萬委員 지금 南委員이나 또 朴委員께서  
 알 權利 들을 權利 읽을 權利 이 얘기는 高  
 在濟委員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  
 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 條項을 넣는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編輯人 發  
 行人 이것이 企業主가 編輯人 發行人을 갖다  
 가 겸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言論機關이 TV  
 다 新聞社다 이것이 社會의 公器로서 막중한  
 責務를 지고 있는 그러한 실지어는 第4府라  
 고 하는 그러한 이름까지 붙은 특수한 그런  
 엄청난 그것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企業이다.  
 그러면 이 企業에 대해서 유독 무슨 編輯 編  
 成을 구분해가지고 憲法에서 규정하는 것은  
 憲法의 明文規定으로써는 이 격이나 모든 것  
 에 이것이 같으나 이러한 懷疑 이러한 면에 있  
 어서의 어떤 疑問點을 提起한 것이라면 이것  
 은 別問題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설  
 령 그런데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憲法을 다  
 루는데 있어서 과연 憲法條文으로써 이러한 것  
 까지도 구분이 되어서 明文化가 되어야 될 필  
 요가 있느냐 이러한 것이 다소 疑問點이 있  
 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우리나라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全部 다 아까 崔炯佑委員  
 도 주장을 했고 또 여러 委員들이 다 주장  
 을 했지만 실지로서 우리나라의 言論界라고 하  
 는 것은 經營主에 대해가지고 發行兼 全部 다  
 를 겸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權力機構에서 壓  
 力을 넣어가지고 진짜로 言論自由를 謳歌를 못  
 하고 있고 아무리 강한 의지로서 記者분들이  
 써서 내더라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報道가 안  
 되고 심지어는 자기네들 權力層의 말을 안 들  
 으면 廣告를 주지 못하게 해가지고 東亞日報  
 가 몇달동안 白紙로서 廣告없는 그런 東亞日  
 報를 編成해서 냈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  
 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소간의  
 문제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南委員에  
 게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러한 주장이 一理가  
 있고 또한 그것이 나름대로의 妥當性이 있다

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言論의 自由를 憲法으로 保障을 했고 또 이 言論의 自由를 憲法으로써 완전히 謳歌시킬 수 있다면 좀 뭐한 感이 있다고 하더라도 編輯과 編修를 明文化해 주어가지고 완전히 言論自由를 謳歌할 수 있게끔 또 壓力이 들어오더라도 壓力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經營陣과 또 一線記者 또 言論人 이것과를 權力을 分散시켜서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壓力을 排除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이러한 現實的인 면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누가 어느 분이 다시 執權을 할지 모릅니다마는 執權者들이 적어도 言論의 自由를 完全保障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더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 小委에서 이 案이 나온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南委員께서 주장하신 것이 不當하다든지 또 그러한 것이 나쁘다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韓國의 言論 또 言論 自體의 權力이 너무나 크게 強化되고 있는 이제까지의 그것을 보아가지고 이것을 小委에서 合意된 대로 이 條文 하나는 그냥 그대로 살려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原則的으로 小委에서 合意된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憲法을 만드는 데 있어서 基本的인 자세로써 그냥 그대로 넘긴다 하는 입장을 이제까지 취해 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南委員이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하시고 그냥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澤壽 朴燦鍾委員 말씀하세요.

○朴燦鍾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알 權利를 표현을 바꾸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알 權利 들을 權利 이런 權利는 18條 1項 言論自由 保障規定 또 제가 지금 條文은 기억이 안남니다마는 새로 넣게 될 幸福權 保障規定 거기에 이미 알 權利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서 宣稱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표현을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小委에서 알 權利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측면으로써 編輯 編成權 保障規定을 넣는다. 그 반대 편의 거기에 종사하는 言論機關과 言論機關員들의 權益伸張 그것은 그쪽 편에서 앞으로 잘 되면 그 保障規定을 붙는지 몰라도 국민의 편에서 보았을 때에는 알 權利

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방법으로 넣었던 것이니까 그 취지와 정신을 살리자 하는 것이 제 意見입니다.

제가 알 權利를 표현을 풀어서 놓자고 애기한 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金澤壽 南委員 말씀하세요.

○南載熙委員 죄송합니다. 後輩委員이 너무 시간을 차지하고 發言을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령 제 심정은 제가 選舉區가 두 個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餘年동안 言論界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言論界도 역시 제 選舉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言論界를 도와 주느냐 그런 각도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朴容萬委員께서 간곡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또 發言했었다마는 「로비」 活動이다 향응이다 反民主다 갖은 부당한 壓力을 받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오히려 歪曲하고 不正確하고 人身攻擊의인 虛偽報道까지 당하는 그러한 壓力下에서 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췌 보기에 經營과 編輯의 獨立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毒이 있다. 이것은 自縛自縛하는 결과가 오고 또 矯角殺牛하는 條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韓柄索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느낀 것은 編輯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요전번 發言에 제가 朴容相 判事가 權利의 主體가 애매하다 이것이 短點이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 言論界의 宋元英 大先輩가 계신다마는 編輯部가 編輯이 아닙니다 編輯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編輯部로 착각하면 큰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編輯이라고 할 때에는 編輯局 전체가 論說委員室이고 다 걸리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編輯에 대한 主體問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령 專務가 發行人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 編輯局長도 거의가 지금 理事입니다. 理事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 아마 言論界에

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세한 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崔炯佑委員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言論界가 저도 言論界에 있을 때 中央情報部에 다섯번 끌려가서 얻어 터지기도 했습니다. 마는 그런데 이 言論界에 編輯權의 문제와 不法의이고 非法的인 中央情報部의 介入問題는 次元이 다릅니다. 그것은 法律問題가 아닙니다.

그 때는 不法의이고 非法的으로 한 것이지만 法の 次元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서 法の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編輯權의 獨立問題가 나오면 결국은 人事權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人事權의 문제에 있어서는 解決方案이 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範圍內에서는..... 두가지는 뭐냐 하면은 編輯局長을 編輯局 全記者가 投票로 해서 選出하는 문제입니다.

論說委員 全員이 投票를 해서 選出하는 문제입니다. 編輯局 獨立에 있어서 選出權制度가 하나 있고 人事異動이 없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新聞社의 主筆은 論說委員이 選出을 하고 編輯局長은 記者 全員이 選出하는 그런 制度가 바람직하나 아니면 社主와 主筆이든 編輯局長이든 가령 4年이면 4年 5年이면 5年 이렇게 契約制로 誘導하려는 基本的인 發想이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法이 制定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그 結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재로서 編輯局長을 編輯局 全記者가 選出하는 것이 그만큼 進歩的이고 한 것같아 얼핏 보기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 發展段階에서 과연 그것은 옳은 方法이나 이런 데에서 疑問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憲法에다가 經營과 編輯의 獨立을 保障한다면 言論機關이 政黨法의 次元으로 들어갑니다. 政黨法과 같은 次元으로 들어갑니다.

言論機關은 아까 先輩님들이 第4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政黨과 어느 意味에서는 比重이 비슷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言論機關에 대해서도 政黨을 規制하는 것처럼 法이 定해야 한다. 그것은 사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言論機關에 대해서 法の 公權力이 會社內部的 人事問題에서 부터 製作方針까지 일일이 개입을 한다면 가령 現在 政黨法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問題點을 야기했느냐 그러면 新聞社의 權力構造를 定하는 것입니다. 三權分立이 아니라 二權分立이 되겠지요. 二權分立의 言論法을 定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新聞記者의 資格問題가 나옵니다.

政黨法에도 政黨員의 資格이 있습니다.

그래서 權五琦 東亞日報 首席論說委員이 요건 「세미나」에서 그것은 좋은 것같지마는 결국은 自繩自縛이고 禍를 自招하는 것이다.

그러면 言論機關內部的 權力分立問題를 定하고 記者의 資格問題를 定하고 그러면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金泳三 新民黨黨首의 法院에 의한 假處分決定과 같은 波動이 言論界에 안난다는 保障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問題는 얼핏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問題가 있다.

그래서 또한 앞으로 執權黨이 될 政黨으로서 이 法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條項을 가지고 下位法을 制定해서 言論界를 꼭꼭 法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法은 言論의 自由를 위한다는 基本趣旨와는 다르게 結果의으로는 言論을 自繩自縛하는 것이요 矯角殺牛가 된다. 물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財閥의 횡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 法으로 과연 고쳐지겠느냐 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矯角殺牛가 된다. 그것은 獨占規制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몇몇 委員들이 말씀하셨고 委員長은 다른 생각입니다.

몇몇 委員은 저 하나만 反對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委員長은 發言 하나 안했다고 그래서 贊成이다 反對다 이렇게 一括的으로 規定짓는 것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論議過程에서 이 條項에 대해서 反對者가

저 하나라면 이 特委가 滿場一致로 합의가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基本原則에 제가 憲特이 잘 되어 나가는 것을 께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反對者가 저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포기할 意思가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을 下位法을 制定하도록 해 놓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後悔莫及한 狀態를 우리가 自招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訓示規定으로 고치고 앞으로 與野가 下位法을 만들어서 言論界를 拘束하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는 基本精神으로 천명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澤壽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 안한다고 해서 贊成도 아니고 反對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잘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2시에 續開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27分 會議中止)

(14時2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澤壽 續開를 선포하겠습니다.

○李錫濟委員 委員長! 議事進行 먼저……

○委員長 金澤壽 그러면 李錫濟委員 發言하십시오.

○李錫濟委員 먼저 發言權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5·16과 4·19를 憲法前文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與野間에 여러가지 論難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19의 根本的인 意義와 또 5·16의 根本的인 취지는 별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넣으려면 둘 다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존경하는 宋元英委員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會議進行 가운데서 어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天使라든지 혹은 惡魔라든지 혹은 도둑놈이라든지 혹은 義人이라든지…… 그러면 이 地上에 누구를 天使라고 그러며 누구를 惡魔라고 그러는 것인지 누구를 도둑놈이라고 그러며 누구를 義人이라고 그러는 것인지 이러한 表現들이 여기서 오고 가고 했다는 것을 딱 유감스럽

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原色的인 어떻게 보면 俗되고 어떻게 보면 市井輩나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이런 點點은 會議에서 지금 歷史의 審判을 받고 歷史의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중대한 憲法會議에 있어서 그러지 않고 좋은 말을 써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같은 의미라도 얼마든지 表現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오고 간대 대해서 딱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會議進行 방법 會議雰囲気를 委員長께 矯正해 주시기를 강력히 要求합니다.

○宋元英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澤壽 조금 계시지요. 李錫濟委員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宋元英委員 가만히 계시요. 發言을 해야겠습니다.

○委員長 金澤壽 發言하세요.

○宋元英委員 憲法前文에 5·16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委員會에 남은 중요한 課題中的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그 동안에 많이 討論이 되었지만은 어저께 會議에서 각각 5·16에 대해서 論難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調整이 되느냐 하는 것이 큰 課題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李錫濟委員이 문제를 다시 일으킨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本委員이 發言한 그 表現에 대해서 이것이 俗되다 또 市井輩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趣旨의 말씀을 하신 것은 문제를 原點으로 돌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李錫濟委員은 듣기가 좀 거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16이 저지른 犯過가 우리 歷史에 매우 크다 이렇게 보는 本委員으로서 그 以上の 表現도 不辭할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내가 사실은 義人과 도둑놈의 並列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李錫濟委員이 取消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한걸음 더 뜬 것은 다 記憶을 하실 것입니다. 天使 소리와 惡魔 소리가 나온 것은 굳이 얘기하자면 李錫濟委員이 誘發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4·19를 義人이다 5·16을 도둑놈과 같은 것이다 도둑놈과 같은 것이다 라고 表現한 줄로 대개

듣는 사람들이 알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저께 다른 委員들이 昭詳하게 설명을 했어요. 4·19는 義舉다 아무 의심없이 피를 흘리면서 民主主義를 위해서 蜂起한 것입니다. 가히 義人에 비길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5·16은 멸정한 政權을 共產黨을 막으라고 준 武器로 뒤집어 엮은 政權의 盜取다 그래 도둑놈에 비길만하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이 所信은 변함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反論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말하는 것을 속되다느니 市井輩가 할 수 있는 얘기라느니 하는 것은 오히려 本委員에 대한 侮辱이고 문제는 이 5·16에 대한 보다 철저한 糾明 糾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으로 우리 會議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委員長이 이 會議을 적절하게 어떻게 運營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委員長의 權限을 行使를 해가지고 本委員이 發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制約을 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金澤壽 서로 李錫濟委員께서도 한 말씀 하셨고 또 宋元英委員께서도 한 말씀 하셨으니까 서로 歷史의 수레바퀴에서 부딪힌 颯風이라고 생각하고 선의로 잊읍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南載熙委員 發言하십시오.

○南載熙委員 午前會議에서 言論條項이 審議되다가 점심식사로 中斷이 되었기 때문에 言論條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言論界 出身이다 보니까 言論條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여러 委員님께서 인내로써 들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쉬는 동안에 委員 여러분과 또는 討論한 적도 있고 또는 默示的으로 의견을 대충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 整理해서 저 나름대로의 여러 委員님들의 생각을 綜合한 결론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國會에 韓國記者協會로부터도 여러가지 聲明이나 意見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의 얘기도 그렇고 또 輿論이나 野黨이나 관계없이 編輯이나 編成이 좀 더 自主的이어야 하겠다 그 뜻에는 누구나 지금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똑 같습니다. 다만 또 인부에서 그것이 法制化가 돼가지고 下位法까지 생겨날 때 자칫 그것이

精羅神話에 나오는 「보보이」와 木蘭의 삶 하나 끌어올렸더니 그 안에는 意키의 勳勳이 있더라 입에는 달걀지근하지만 거기에 毒이 있더라 이런 우려가 그런 愚를 犯하는 것은 우리가 피하려는 뜻에서 가령 거기에 下位法이 있어가지고 自縛自縛이 되거나 또는 觸角觸牛가 돼서는 안되겠다 政黨法과 같은 것이 言論에 言論法이 또 생겨가지고 그것이 拘束的으로 作用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뜻을 대충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言論界 同僚들의 熱望을 反映하고 理想을 反映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나중에 毒素條項으로 下位法에 다시 言論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양쪽의 위험을 피하면서 그러면서 理想을 어떻게 反映하느냐 그러다가 보니까 역시 이것은 強制規定的인 성격 보다는 訓示的이고 宣言的인 規定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法科大學은 나왔습니다마는 辯護士가 아니고 法官이 아니어서 제 意見이 法律的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본 것은 「編輯과 編成은 자유롭고 自主的이어야 한다」 이렇게 宣言的이고 訓示的으로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다시 한번 읽는다면 「編輯과 編成은 자유롭고 自主的이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訓示的으로 애초에 原案에 있다가 削除했다가 다시 刪去된 그 條項을 代置를 하면서 반면에 우리 改憲特委나 또는 앞으로 本會議에 報告가 될 것입니다마는 本會議나 또 앞으로 어 憲法이 確定될 경우 이 憲法의 理想이라는 것은 어떤 下位法을 編定해서 言論을 拘束하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宣言的 訓示的으로 권명해서 우리 言論의 理想을 한번 권명해 주고 勇氣를 불어 넣어주는 데 있다 이런 우리가 特委의 諒解事項 또는 하나의 基本的인 하나의 精神的인 合意로 우리가 그런 바탕에서 한다면 下位法에 의한 毒素條項을 우리가 排除하면서 우리 言論同僚들의 그러한 理想을 또 그 사람들의 熱望을 反映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 修正案을 提案하는 것입니다. 많은 委員님께서 審査하시고 찬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澤壽 金守漢委員 말씀하세요.

○金守漢委員 지금 南載熙委員의 衷情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오늘 午前에

도 여러 委員들께서 本委員도 主張을 했습니까  
 다마는 憲法에 왜 이것을 明示하자고 하느냐?  
 지금 그러한 訓示의이고 宣言的인 것이 과거  
 우리나라 憲法精神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전연 履行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憲法에 이것을 明文으로 명백히 단순히 宣言  
 的이거나 訓示的이 아닌 이러한 規定을 우리  
 가 插入을 하고 다만 南載熙委員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려하는 것처럼 이것을 오히려 逆利  
 用을 해서 下位法을 통해가지고 矯角殺牛의  
 인 그러한 妄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우리가 晝食 前에 停會 直前에 南委員  
 이 말씀하신 가령 우리 憲法特委의 速記錄에  
 명백히 이것은 그러한 누가 下位法을 통해  
 가지고 爲政者나 權力者가 다시 이것을 뒤집  
 어서 惡用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우리가 會議錄에 記錄을 하고 넘어가  
 면 된다 이렇게 아까 南委員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折衷하거나 修  
 正한 性質의 것이 못됩니다. 단순히 그러한  
 訓示的이고 宣言的인 것을 하려고 하면은 의  
 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과  
 거의 言論에도 그러한 訓示的이고 宣言的인  
 성격의 정신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은 아  
 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  
 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憲法은 우리가  
 基本法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規定을 編成과  
 編輯은 分離 獨立한다 하는 것을 憲法에 명백  
 히 하나의 根據法으로서 만들어 두어야지 그것은  
 宣言的이다 그러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  
 만이다 訓示的이다 되도록 그저 遵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小委原案대로  
 하고 南委員이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우리 憲特의 速記錄에 명백히 우리의 정  
 신이 바로 이러한 것에 있었다 하는 것을 記  
 錄으로 담아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午前會議에서도  
 그랬습니까마는 이런 정도로 해 주시고 그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南委員 理論에 나는 찬성  
 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다시 委員  
 長에게 그렇게 會議를 進行시켜 주는 것이 좋  
 겠다 이렇게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澤壽 모처럼 發言權을 청하셨으니

崔致煥委員 發言해 주십시오.

○崔致煥委員 어제 오늘 이 중요한 18條 基  
 本權에 관해서 더우기 民主主義를 우리가 앞  
 으로 지켜가고 民主化되는 過程에 있어서 言  
 論의 自由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所重하다는  
 것을 방불케 하는 진지한 會議가 이를 동안  
 이나 계속되는데 나는 지금 金守漢委員께서  
 좋은 얘기를 했습니까마는 言論人으로서 後輩  
 에 여러가지 累가 되지 않기 위한 그 衷情  
 으로 所信을 피력했던 그 南載熙委員이 오늘  
 이와같은 提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오히려  
 議會人으로서 용기있는 決斷을 내려준데 대해  
 서 同僚議員의 한사람으로 뜨거운 感謝를 오  
 히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 趣旨는 지금 發言  
 的 그 要旨는 이 編輯과 編成의 獨立이라고  
 할까 이것이 權力으로부터 保障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衷情이 下級法이 만들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룩되어야 된다 하는 그  
 衷情이 잘 傳達되지 못한 가운데 政治人으로  
 서 소중히 여겨야 될 政治生命에 여러가지로  
 금이 갈 정도로 상처를 입힌 이러한 記者協會  
 의 聲明도 있었고 그러한 一部 報道도 있는데  
 대해서 오히려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우리 憲法特委가 國民  
 들의 熱望인 이 單一案을 만들려고 하는 이  
 중요한 그런 時點에 있어서 이것을 打開하기  
 위해가지고 南委員이 내려 준 決定은 政治  
 人으로서 위대한 決定이고 용기있는 決定이고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진정 後輩를 위하여고  
 하는 그러한 衷情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들  
 고 感銘깊이 느끼는 바입니다.

金守漢委員께서 要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저는 이 言論關係가 여러가지 이렇게  
 論難이 될 적에 저 「블랙스톤」教授가 이야기  
 한 「티메리티」言論에 대해서 蠻勇을 베푼 사  
 람은 그 사람이 全的으로 責任을 져야 된다  
 는 그 유명한 句節을 想起하면서 傾聽을 했  
 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어려웠던 難  
 關이 劇的으로 妥結이 되려고 하는 이 순간  
 에 있어서 지금 表現에 약간의 差異때문에  
 이러한 問題들이 나오는데 南委員은 어디까지  
 나 下級法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訓示規  
 定으로 規範力을 갖는 그런 식으로 表現을  
 하자 이것이고 金守漢委員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逆利用당할 憂慮가 있으니까 이것을 못박고

넘어가야 된다 다 一理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與圈의 幹事라는 責任을 지고 있는데 우리 委員長 또 野黨의 幹事들 특히 南載熙委員의 그 意圖가 이것을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意圖이기 때문에 이 表現에 관한 약간의 문제는 저한테 막강한 일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넘겨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합니다. 南委員과 折衷해 줄 수 있는 그런 機會를 주시면 이런 문제가 金守漢委員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와 결들여서 많은 委員들이 강조한 言論이 權力으로부터 진정히 獨立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企業主나 戒嚴權으로부터 獨立에 앞서서 權力으로부터 이것이 튼튼히 獨立과 保障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意圖가 높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表現의 여러가지의 문제는 그와 같이 調整의 時間을 주었으면 그런 식으로 이것이 매듭을 지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議事進行兼 제 意見을 드리고 또 한가지 결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이 南載熙委員께서 그 表情이 충분히 傳達되지 않는 가운데 政治人으로서 입었던 상처는 이것은 무엇인가 回復이 된다고 할까 補償이 되어야 된다 하는 심정이 憲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우기 느낍니다. 우리가 20年만에 처음 國會에서 이 憲法의 改正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우리가 憲法改正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50年代에 두번 60年代에 네번 70年代에 한번 이번 해서 여덟번째인데 우리 國會議員이 憲法改正을 마음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所信을 피력해 가면서 다루는 것이 20年만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各自가 가지고 있는 意見各自가 가지고 있는 所信 이런 것을 披瀝하는 가운데 傳達가 잘못되어가지고 그 表情이 歪曲 報道된 그런 例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以上 제 所信을 결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많은 言論인들이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문제에 큰 關心을 쏟고 있는 3,500名의 韓國의 言論인들이 이 문제에 反對하는 것같은 意見을 냈던 南載熙委員의 表情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이 機會를 통해가지고 잘 소명이 되었으면 하는 同僚委員의 立場에서 또 與圈의 幹事의 立場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제

意見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澤壽 李必善委員 發言하세요.

○李必善委員 방금 전에 崔致煥委員 말씀과 마찬가지로 一理는 있습니다. 그러나 政治라는 것은 根本적으로 우리가 確信을 가졌을 때는 또 確定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政治人들의 所信에 立脚한 정당한 얘기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주 고쳐가지고 訓示規定이나 宣言的인 事項으로 變質化한다면 그 間에 우리가 참 長時間에 걸쳐서 爛商討論을 한 意義가 없습니다.

이 낱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알 權利 視聽覺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權利는 과연 아까 南載熙委員 말씀대로 理解가 갑니다. 어떤 다른 方法으로 표현을 해도 된다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쓸 權利 卽 權利 編成 編輯에 있어서 그 間에 獨裁 政治의 暗黑下에 가장 基本的인 彈壓의 對象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알고 느끼고 있고 實感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編輯 編成에 대해서 獨立性 保障을 안하면 民主化는 遙遠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自他가 常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물론 말재주를 가지고 꼬리를 물어서 여러가지 利用하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根本적으로 法의 制定의 趣旨에 있어서는 이미 第1分科에서 各 交渉團體別로 代表가 충분히 爛商討論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確定한 事項입니다.

그렇으니 만치 아까 金守漢委員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言論問題에 있어서 第1 중요한 것은 소위 財閥이 言論을 經營함에 있어서 사실상 執權者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阿諛 阿附하는 事項이 言論의 運營을 그르쳤다 그랬으니 만치 마땅히 그 是正策이 民主化 課業에 있어서 앞서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 문제가 編輯 編成에 있어서는 獨立性이 保障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第1分科에서 審議 確定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千이 萬이 말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矯角殺牛가 된다든지 副作用이 일어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經營에

있어서는 損益計算은 企業主가 한다 손치더라도 運營에 있어서는 言論人 모두가 自律的으로 民主化와 言論의 暢達을 위해서 所信것 活動할 수 있는 權利를 바로 保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權利는 民主發展에 絶對的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確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가령 維新憲政을 民主化보다 훨씬 앞선 좋은 政治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野黨이 보는 國民이 보는 눈은 維新憲政은 獨裁政治의 極致다 이렇게 確信했던 것 아닙니까? 確信했던 事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도 사실 比例代表制 문제를 절대 反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委員들이 일단은 比例代表制 문제에 대해서 本委員에 同調를 하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示範을 남기기 위해서 本委員이 歷史的인 증언을 하고 比例代表制 문제는 일단 그대로 默過하겠다 이러한 所信을 가지고 지난번 第1次會議에 通過를 시켰읍니다.

그렇다면 이 言論條項도 물론 南委員 나름대로 論理가 있겠지만 全體 國會議員이 별로 異意가 없다면은 南委員도 憲法의 單一化 우리가 항상 論難했던 民主化를 위해서 조그마한 방법의 차이라면 혼연히 同調해 주고 讓步해 주는 것이 우리 歷史的인 民主憲法改正에 도움이 된다 이런 사실을 本委員은 確信하기 때문에 南委員은 南委員대로 물론 所信을 충분히 披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당에 있어서는 南委員은 단 혼자만의 方法上의 차이로 反對를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나 자신도 示範을 했으니까 일단 讓步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그것이 順理다 이렇게 確信해 마지 않기 때문에 議事進行으로 南委員께 讓步를 촉구하면서 몇 말씀했습니다.

○委員長 金澤壽 李鍾植委員 發言하세요.

○李鍾植委員 저도 憲法特委에서 言論界出身으로 나온 委員中の 한 사람입니다. 허나 言論界 同僚들은 李鍾植은 말이 없으니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고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생각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생각은 했읍니다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입

때까지 말을 안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編輯이 權力으로부터 獨立이 되어서 自律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論理입니다 當然性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 提起됐읍니다. 제가 걱정하던 것이 바로 여기에서 提起가 됐는데요 말하자면은 이것을 宣言的인 규정으로 만들 것이냐 下位法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論理를 구성하는데에는 무슨 말이라도 다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를 適用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입니다.

南載熙委員께서도 말하자면은 下位法을 만들면 矯角殺牛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南載熙委員 나름대로 여러가지 研究를 했던 部分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반드시 옳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없지만은 어쨌든 걱정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까 南載熙委員 말씀하신 것처럼 編輯權의 獨立은 우선 人事權獨立이 되어야 됩니다. 編輯權이 獨立이 된다고 해서 記者들한테 獨立權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新聞을 보시면 新聞에는 發行人이 있고 編輯人이 있습니다. 그 編輯人이라는 것이 대개 主筆아니면 副社長이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記者協會에서 보면 그것은 言論人이기는 하지만은 經營者側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傾向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人事問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만약에 이것을 宣言的인 規定이 아니고 法制化할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憲法 18條 5項에 보시면 이제 他人의 權利侵害에 대한 損害賠償이라든가 侵害補償規定이 있습니다. 그런데 例를 들어서 엄격한 意味에 있어서 編輯權獨立을 해가지고 發行人은 또 우리가 編輯을 해놓을테니까 너희가



自信있으면 發行을 해가지고 配付를 하고 하  
든지 말든지 그것은 너희들 權限이다 우리는  
編輯을 해가지고 이 以上 讓步못한다 이렇게  
對立이 될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新聞에는  
記名記事가 있고 記名되지 않은 記事가 있습  
니다. 記名記事는 일단 法에 의해가지고 本人  
에게 損害賠償을 물린다든가 쓴 사람 個人이  
責任을 진다든가 하는 경우로 法制化시킬 수  
도 있습니다마는 만약 無記名記事에 대해서  
責任을 누가 지느냐 말하자면 發行人이 責任  
을 지느냐 안그러면 編輯權獨立이 되어 있으  
니까 쓴 記者가 責任을 지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自信이  
안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法에 의해서  
어떻게 適用이 되고 어떻게 整理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自信이 안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  
는데요. 多幸히 아침에 新民黨분들 조금 讓步  
를 해주시면 아침에 記者協會에서 나온 決議  
文 가운데에도 宣言的 規定을 하는 用語가  
있습니다. 만약 宣言的 規定이라는 用語가 그  
것이 우리 記者協會의 본뜻이라고 그렇다면  
그러한 線에서 하면 거기에 맞도록 表現을  
한다는 것은 이 쪽에서도 인색하지 않겠다는  
것이 南載熙委員의 말씀이니까 일단 그런 어  
면 全體的인 合意만 해주시고 나중에 小委員  
會에다 넘겨주시면 거기에 적합한 表現을 만  
들어가지고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澤壽 李龍熙委員 말씀하세요.

○李龍熙委員 本委員은 基本權小委에 所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可  
及的 言及을 回避할 생각으로 이 時間까지  
참아 왔읍니다마는 문제가 이렇게 되면 상당  
히 복잡해 집니다. 여기에 基本權 小委員이 한  
두사람도 아니고 諺號名 앞아서 滿場一致로  
合意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러  
고 저러고 말이지요. 공교롭게도 지난 9日  
우리 몇사람이 빠진 그 會議에서 아마 再論  
해가지고 뒤집어 놓았던 것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本委員도 할 말이 이만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午前에 南載熙委員말씀이 나  
 혼자 反對하는 것이라면 혼연히 응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연거퍼 3日동안 發言한 그 記錄  
으로 보더라도 南委員의 뜻은 충분히 反映되  
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本委員 자신은 言論界  
出身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이 문제를 가지  
고 우리가 基本權小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合  
意를 볼 때에는 여러가지로 생각도 해보았습니  
다. 이모저모로 뒤집어 놓고도 보고 얹어놓고  
도 보고 다 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서 表現하는 語句 몇字가지고 이려고저려고  
是非를 한다면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기왕 獨立을 시켜 주려면 몇몇하게 獨立을 시  
켜주어야지 거기에 또 깨끔직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해놓고 결국 앞으로 言論機關을 經  
營하는 企業主들이 자기들이 참 좀 더 改過遷  
善해가지고 올바르게 言論을 認識해가지고 제대  
로만 運營해 준다면 앞으로 10年이나 20年  
30年 後에 또 憲法改正 안한다는 保障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때 가서 다시 되돌려 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 時間 現在로 볼 때에는  
우리가 過去의 歷史를 되짚어볼 때 반드시 이  
것은 獨立시켜 주어야 된다 그런 趣旨에서  
한 것이니만큼 南載熙委員이 이 部分만은 흔쾌  
히 讓步를 하셔서 小委員會에 미루고 하는  
그런 것은 피하는 方向으로 해서 오늘 이 자  
리에서 이것 매듭짓고 넘어갑시다.

○崔炯佑委員 南委員! 그렇게 합시다.

○南載熙委員 여기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崔炯佑委員 그것은 南委員의 생각을 너무  
외로워서 補充한 것뿐이지……

(웃음소리)

○李龍熙委員 분명히 9日은 言論人이 反對  
하기 때문에 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  
아요. 記錄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讓步  
하고 넘어갑시다.

○委員長 金澤壽 나는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  
이 좀 드네요. 대체로 여러분들 意見을 다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政治  
를 한다고 여기에 참 애를 써가면서 일하는데  
누구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언젠가  
우리도 다 한번 당하는 運命이 오지않느냐 하  
는 것을 想起를 한다면 너무 왜곡되게 報道  
가 된 側이 있다면 이것은 그래도 南委員한  
테 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한마  
디쯤 있어야 우리 國會가 盛하지 우리는 言

論自由를 위해서 當爲性이 어디있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討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불려서 온 全國「미디어」를 통해가지고 이래버리고 나면 곤란한 것이 아니냐…… 내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公正하게 본다면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어찌 됩니까? 記者協會도 그래도 한마디 反民主다 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正式으로 한마디 그래도 얘기도 있고 무슨 일이 秩序가 있고 餘裕가 있고 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누구側을 위해서 두둔하고 누구側을 위해서 해롭게 發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러한 것은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한번쯤 있고 서로 기본종계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立法過程에 있어서 國會議員의 言論의 自由 이것도 확실히 保障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 좀 귀에 거슬리면 이렇게도 해버리고 저렇게도 해버리고 이러한 風土가 常存하는 것은 나는 民主言論을 暢達하려고 하는 이 時點에서 言論에 從事하는 분들도 응당히 自肅을 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주는 者가 있으면 받는 者가 있고 받는 者가 있으면 주는 者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받아 들입니다.

南委員께서 다 받아들이고 그래도 사람이 다 自尊心이 있고 體面이 있고 집에 가면 妻子가 다 있고 친구가 있고 한테 너무 歪曲되게 報道가 된 어느 側이 있다면 그래도 人間의 社會에서 그것은 너무 過하게 되었다 하는 하나의 「코멘트」도 그것도 우리가 아니 지켜 가면서까지 우리 自身을 自虐할수 없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所信입니다. 하니까 오늘 하나 내일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뜻에 대해가지고는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자 하나 우리도 體面이 있고 그래도 40萬내지 80萬의 有權者의 하나하나의 票를 모아서 當選이 되어 온 우리에게 言論의 自由로부터 保障을 받을 權利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 意思대로 다 받아들이는 條件下에서 그래도 來日 最終 마무리를 해서 그것 할 때까지는 좀 미안하게 생각한 側이 있다면 그래도 한마디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양해를 해달라 하는 그것도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누구를 위해서이 좋을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받아 들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他意가 없습니다 하지마는 이러한 節次도 우리가 한번쯤은 밝고 넘어가는 그러한 美風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 個人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만 他意는 하나도 없습니다.

○韓柄來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澤壽 韓柄來委員 말씀하세요.

○韓柄來委員 이것 중요한 문제인데 委員長께서 대단히 建設的이고 또한 圓滿한 우리 委員會를 運營하기 위한 진지한 말씀에 대해서는 敬意를 표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맡은 職務 우리들의 姿勢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일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하는 그 分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憲法을 만드는 것은 國民的 合意를 이룩한 民主憲法을 우리 스스로가 制定하는 것입니다. 그 제정하는데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다 좋은 憲法을 만들기 위해서 各界 各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만듭니다.

그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가령 우리 委員會의 自尊心을 傷하게 했다거나 여러가지 副作用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憲法을 만드는 職務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法廷에서 判事가 裁判을 하는데 그 被告人의 家族이 불만스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被告人에게 苛酷한 懲罰을 내린단든지 裁判을 無期延期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法官으로서 高유의 직무와 사명을 忘却한 자격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핏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憲法改正審議委員會의 高유의 職務 高유의 任務 이것은 委員長께서 걱정하신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 外에 이 憲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副作用은 그것은 이 문제와는 별개로 政治的으로 얘기가 오고가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憲法을 제정하는 이 막중한 任務와 이 제정하는 과정에 생긴 副作

用과 條件關係를 걸거나 원인관계로 걸어서는 憲法을 제정하는 기본적인 憲法委員으로서의 자세나 몸가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남어지 副作用問題는 별도로 委員長과 幹事께서 이 문제를 일으킨 분들 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 양해를 얻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議事進行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澤壽 韓柄案委員 좋은 말씀하시는 데요 내 얘기를 갖다가 眞意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무슨 條件關係를 맺자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오늘 전부 다 오늘 매듭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方法이 아니겠느냐…… 條件關係가 아니고……

(「議事進行 發言하나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예 崔炯佑委員 하십시오.

○崔炯佑委員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憲法特委의 운영이 전체의 合意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서 어떤 案件에 대해서 한사람도 反對를 하면 한 문제도 통과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與野 野圈 憲法案이 그래도 共通點이 많아서 대중 合意해서 통과되었읍니다.

이제는 남은 것이 憲法前文 勞動三權 團體行動權保障 選舉年齡 編輯 編成權 獨立權保障 기타 與野 野圈의 미결된 사항 약간일 것입니다.

아까 李必善委員께서 말씀하시다시피 李必善委員께서도 比例代表制에 대해서 우리 新民黨의 黨論으로 확정된 사실이지만 자기는 政治的인 소신때문에 反對를 했고 그 反對의 의지를 歷史記錄에 남기기 위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읍니다. 아울러서 反對의 思想해서 南載熙委員께서도 言論의 編成權 編輯獨立 保障問題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委員이 여기에 贊成을 합니다마는 南載熙委員께서는 오랫동안 言論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오히려 言論이 自由를 침해될 그런 言論人으로서 많은 體驗한 經驗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우려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國民이 바라고 各界各層이 바라는 이 時點에 하루속히 國會憲法이 滿場一致로 國民의 合意에 의해가지고 우리는 政府로 移送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國民이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根本的인 이 會議에 대한 합의점에 대해서 그대로 會議을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남은 문제에 대해서 委員長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한사람이라도 여기에 승복치 않는다면 이것이 通過될 수 없다는 이 原則에 의해서 會議을 운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編輯 編成權 保障問題에 있어서는 委員長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 또 南載熙委員의 대중 말씀은 言論人들이 바라는 編輯 編成權 獨立을 보장해 준다는 그 前提下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합의를 해서…… 그러나 委員長이 말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南載熙委員의 체면을 생각하더라도 내일 小委員會에서 한번 論議를 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합의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 문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議事進行 發言을 통해서 與野의 幹事 그리고 新民黨의 李龍熙委員을 포함해서 이 未決된 案件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또 授權을 하고 우리 本全體會議에서 報告를 해가지고 滿場一致로 通過하는 그런 方法으로 議事進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澤壽 예. 宋元英委員 發言하십시오.

○宋元英委員 崔炯佑委員 議事進行을 나누어서 하셔야지 구분이 안됩니다. 나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編輯獨立權問題하고 지금 전체를 넘기는 문제하고는 분리를 해 달라 그 말이에요. 委員長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編輯權問題에 대해서는 그것은 南載熙委員이 사실상 꼭 설명하시다시피 이것이 矯角殺牛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논쟁을 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가지 주변사정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確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多數가 결국은 아까 말씀한 그 訓示規定보다는 좀 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意見이 있고 南委員이 거기에 대해서 贊成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또 委員長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韓柄索委員은 무슨 條件을 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을 한 그것으로써 暗黙間에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을 자주 캐고캐고 하면 限이 없습니다 限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編輯의 獨立問題는 큰 고비는 넘은 것이다 이렇게 認識을 하고 委員長案대로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을 합니다.

(「議事進行이요」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澤壽 編輯에 관한 문제입니까?  
發言하십시오.

○李必善委員 이것이 우리가 이 憲法審議 過程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客觀的인 狀況을 土臺로 할 이유는 없다 主觀的으로 國會議員各自가 아는 자기 상식과 所信에 의해서 議決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떠한 客觀的인 狀況 때문에 그 體面에 의해서 이것을 小分科委員會에다가 移管한다라는 速記錄이 나올 때에는 이것은 지극히 유감된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다수의 合意에 의해서 論理가 좁혀졌다 이러면 少數意見은 어디까지나 少數意見으로 集約된 가운데 承服을 해줄 수도 있는 아량이 있어야지 이를 가지고 小分科에다 넘겨서 또 재탕 삼탕하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式으로 나간다고 하면 나는 애당초에 比例代表制問題는 내 議員職을 걸고 관철을 안시키기 위해서 딱 그 所信을 굳혔던 바입니다.

그러나 이 憲法特委에서 나만의 決心에 의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論理를 펴나가면 모처럼의 合意를 하는 그러한 過程에 結果는 내 主張이 옳았을는지 모르지만 過程에 있어서는 그릇된 誤解를 誘發한다 이래서 承服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承服의 관례가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이 바로 政治입니다.

이것을 도리어 이 政治的 次元을 넘어서가지고 我執과 體面에 의해서 決議를 못하고 다음 小分科委員會에다가 넘겨야 되겠다 또 넘겼다고 할 때에 우리 國會憲法特委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客觀的으로 일어난 狀況은 우리 審議 過程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勞動三權問題 團體行動權에 대한 法律로 制約한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 등도 本委員은 상당히 勞總의 모든 幹部로부터 협박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 협박받았다고 해서 그 사과하기 전에는 審議않겠다 넘겨주겠다 좀 留保해가지고 다시 해보겠다 이러한 政治人의 基本姿勢에 어긋나는 금이 가는 일이 만약에 이 全體會議에서 論議가 된다면 아마 우리 憲法審議過程에 그 矛盾이 도리어 많은 國民의 批判과 誤解를 불러 일으키리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간에 爛商討論을 충분히 했으니까 거기에도 미흡한 事項이 있으면 南載熙委員이 더욱 더 速記錄에 남겨두시고 오늘 言論人에 대한 編輯 編成權은 마땅히 여기에서 議決을 하는 것이 거의 常識 慣例가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오늘 다른 것은 혹시 小分科委員會에 一任하는 限이 있더라도 이 事項은 우리가 매듭짓는 것이 마땅하고 妥當하다 이렇게 所信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南載熙委員 아까 崔炯佑委員님께서 宋元英委員께서 지적하시피 두가지를 한꺼번에 하셨는데 그 崔炯佑委員의 前半과 宋元英委員의 동의가 一致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崔炯佑委員의 後半은 結果的으로 6인이 되는데 그것은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全體的으로 걸리겠습니다마는 저는 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崔炯佑委員이 제의한 後半에도 찬성을 하고 또 崔炯佑委員이 제안한 前半과 宋元英委員께서 제안한 문제에 찬성을 하면서 오늘의 討議過程을 충분히 참작해서 小委에게 全權을 맡기면 承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必善委員 이런 식으로 나가면 會議가 안 됩니다.

議事進行 發言을 주십시오!

○委員長 金澤壽 發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 잘하기 위해서 얘가지 일을 잘못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善意로 받아들이고 문제는 딴 것은 정리가 다 되었는데 유독이 한 件만이 留保狀態에 있다면 그런 얘기가 안나오겠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論議를 해가지고

오늘 다 結論이 날는지 안날는지 모르겠습니  
다마는 留保해 넘기는 「케이스」가 암만 해도  
몇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때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 아까 말씀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일하는데  
審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냐!  
基本精神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  
이지 딴 것은 아닙니다.

南載熙委員도 아까 그것가지고 말씀하셨고  
이랬으니까 조건부도 아니고 다 그런 것이  
아니냐 이래서……

○李必善委員 우리가 다섯가지 문제인데 한가  
지 문제 言論에 대한 編輯 編成權의 獨立保障  
問題 이 문제는 지금 討議해서 決議할 단계에  
있고 나머지 문제는 아직 上程이 안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決議를 한 다음에 나머  
지 문제는 小委員會에다가 委任해가지고 審  
議한 연후에 全體會議에서 決議한다 이것은  
本人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承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討議하다가 체면때문에 결국은 小分  
科委員會에다가 委任하고 우리가 散會했다 그  
얼마나 씩스러운 일이에요 아니되면 아니되  
고 되면 되고 분명히 못을 박자 이것입니다.  
이래야지 討議過程에서 이미 理論은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理論이 좁혀졌는데 그 좁혀진  
理論을 小分科委員會에다 委任해 봤던들 재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봐서 運營의 誤  
解 要素때문에 南載熙委員도 反對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運營의 誤解要素 사실 目的面에 있어서는  
자기도 그렇게 言論暢達을 위해서 編輯 編成權  
에 대해서는 獨立保障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다면 대다수 國會議員 대다수 憲法特  
委 委員들이 原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끝끝내 이것을 저지하고 承服을 않  
는다면 本委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  
람은 몰라도 나는 比例代表問題는 내가 憲法  
特委 審議委員을 사퇴하고 國會議員職을 사퇴하  
더라도 못낸다는 것을 우리 新民黨 特委委員  
모임에서 분명히 밝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討議過程에서 여러가지 참작  
을 해 볼 때 大를 위해서 小는 희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그 慣例를 안 남기기

위해서 내 意思를 發表를 충분히 해가지고  
동조세력이 있다면 과연 여기서 좀더 討論을  
벌이되 동조세력이 없으니까 歷史的인 事案으로  
우리가 수복을 하고 後退한다는 무엇인가 수  
복을 남겼다 慣例를 남긴다 그랬어요. 이런  
事案이 지금에 와서 완전히 뒤집어진다  
憲法問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한두사람  
의 反對로써 계속적으로 어려운 고비가 발생  
되지 않느냐… 政治人은 양심에 의해서 承服할  
때는 承服하고 양보할 때는 깨끗이 양보해야  
지 체면에 의해서 끌고 간다 설혹 체면에 의  
해서 끌고 가라고 해도 끌고 가서 아니되는 것  
이 바로 우리의 憲法審議를 하고 있는 審議  
委員들의 基本姿勢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제  
가 되풀이 재삼 強調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言論에 대한 編輯 編成問題  
는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決議해야 됩  
니다.

(場內騷亂)

○委員長 金澤壽 그래서 일이 이렇지 않습니  
까?

아까 李必善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  
다면 整理가 빨리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  
법이니깐 넘겨도 좋다는 兩論이 나오니까 자  
꾸 얘기지 누가 여기에 私를 개입하려는 사  
람 아무도 없어요 없으니까……

○金守漢委員 지금 反對하는 분이 與圈에도  
몇분이 계신다거나 상당한 反對者가 있다면  
모르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南委員한분 아니요?

○宋元英委員 나는 南載熙委員에게 여러 사람  
들이 公開席上에서 讓步를 하라고 強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發言한 趣旨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南  
載熙委員이 言論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  
러한 修正案을 主張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믿고 있어요. 速記錄을 꼭 읽어보고 그러나  
南載熙委員의 理論도 理論이지만 또 다른 委  
員도 충분히 타당한 理論이 있고 거기에 대  
해서 내가 알기에는 南委員이 모처럼 낸 宣  
言的 規定 自體도 讓步를 했다 말이에요. 그렇  
게 宣言的 規定을 하지 않겠다 좀 더 적극적으  
로 規定해도 좋겠다 그렇게 나는 記憶하고  
있어요.

○南載熙委員 그런 얘기 한 것이 아니예요.

○宋元英委員 그런 것아닙니까? 나는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宣言的 規定이 아닌 보 다 좀 強力한 規定을 하더라도 이것이 矯角 殺牛가 되지 않는 어떠한 研究가 必要한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小委員會에 넘기 는 것이 어떠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나는 理解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結果는 큰 고 비를 넘었다 내가 아까 얘기 할 것은 이것 이 結局은 南委員이 宣言的 規定을 고집한 것 이 아니고 거기에서 進一步하는 規定으로 나 가도 좋은데 여러가지 技術的인 문제가 있으 니까 넘기자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받 은 것입니다. 또 委員長이 아까 記者協會얘기 한 것은 모처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하지요. 그 憲法改正案을 審議하는 過程에 서 各種 團體에서 우리가 陳情도 받고 그랬 어요 그랬지만 어느 團體에서도 이것을 넣지 않으면 反民主라는 이런 表現을 한 일은 없 습니다. 나는 이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에요. 그것을 委員長이 아까 지적을 했는데 동시에 그것이 무슨 條件 걸린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 지적한 것으로 끝났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條件 거느냐 굵 어 부스럼을 만들을 必要가 없지 않느냐 이 렇게 보아서 문제는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 냐 暗黙問에 다 아는 것이지 저것을 넘겨가 지고 저기에서 무슨 어물어물해 가지고 毒素 條項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지금 狀 況이 나는 이것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 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서 넘겨도 무방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 씀드리는 것입니다.

(場內騷亂)

○委員長 金澤壽 李委員 發言權은 다 드릴테 니까 우리가 너무 다급하게 하지 말고 좋은 方向대로 해 나갈시다. 그러니까 지방 일이 이래 패 있어요. 양쪽 얘기를 보니까 다 一 理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양쪽이 일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 다 잘 하자는 것이고 일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한쪽이 안 하자 하면 모르는데 다 잘 하자는 것인데 내가 이것 司 會를 잘못해서 그런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대체로 數字를 보니까 비슷한 數字입니다.

이런데 授權해서 넘기자는 분도 있고 여기 에서 하자는 분도 있고 答을 안 하는 분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 내 請을 하나 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李道煥委員께서도 말씀이 있 었고 崔致煥委員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李 廷植委員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南載熙委員 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역시 數가 적은 數字 가 아닙니다. 한 사람 南載熙委員만 자꾸 얘 기할 것이 아닙니다. 많은 數字입니다.

또 거기에 宋委員도 그렇게 견해를 그런대 로 答은 다 나왔는데 그럴만도 하지 않느냐 이런 數字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지 南載熙委 員이 혼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大 를 위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오늘 이 編輯權 獨立問題는 여기에서 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갈만도 하지 않느냐 넘어갈는가 안 넘어갈는가는 잘 모릅니다 갈만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갈만하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 지 그 이상 發展시키면 委員長이 獨裁니까 獨裁憲法이 아니니까 이러한 고충을 좀 參酌 을 하셔가지고 좋은 答은 나올 수가 없겠는 가 이렇게 나가 놓고 停會까지는 아니가더라도 좀 어떻게 答이 나올길이 좀 없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政治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 한 일이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朴海充委員 南委員 李必善委員의 比例代表制 와 마찬가지로 南委員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 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이 編輯權問題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金守漢委員 우리가 다 여기에서 傾聽을 했 습니다. 李廷植委員께서도 自信이 없어서 이렇 다 저렇다 이런 의견이 없고 뚜렷하게 所信 을 밝힌분은 南載熙委員 한 분이에요. 崔致煥 委員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趣旨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니까 내 얘기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委員長은 嚴正 司會를 보시고 이 憲特의 委員長으로서 嚴正 中立하 신 것으로 하는데 그러나 基本的인 所屬은 與圈입니다 하니까 미안한 얘기이지만 우리 野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委員들도 전부 지금 말씀 안하니까 委員들이 다 贊成한다 이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뚜렷이 表示한 분이 한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委員長도 이제 는 委員長이자 與圈의 입장에서 基本所屬이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나가야지 한분이 午前부터 지금 이 時間까지 아닙니까? 이제 충분히 意見도 開陳이 되었

어요 하니까 자꾸 議事進行을 하면은 저도 격한 때가 있습니다마는 서로 말을 하다가 보면 本質問題는 제쳐두고 자꾸 말에 꼬투리가 생겨! 이래가지고 자꾸 是非가 再燃되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해서 하나 넘겨놓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委員長 金澤壽 發言은 우리가 다 귀가 아프도록 들었으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한 5分 停會합시다.

(15時31分 會議中止)

(15時4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澤壽 續開를 宣言합니다.

대체로 意見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崔致煥委員께서 매듭을 지어서 報告를 하겠습니다.

○崔致煥委員 참 歷史的인 순간입니다. 이 韓國의 言論의 自由를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던 與野委員들이 連 3日 이렇게 言論의 自由保障이 韓國의 民主化에 진짜 大宗을 이룬 그런 길이다 이런 것을 인식을 해서 오늘 하루종일 이와 같이 의논끝에 爛商爛商 또 討議討議를 거듭한 끝에 다음과 같이 決議되었다는 것을 報告드립니다.

아까 벽두에 제가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참 言論을 진정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이 言論이 權力으로부터 侵害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견지에서 表情을 가지고 그 동안 많은 論爭을 펴 오던 南載熙委員 張本人이 舉論을 했읍니다마는 18條 3項입니까? 編輯과 編輯의 獨立은 保障한다 하는 式으로 意見이 좁혀졌다는 것을 영광된 마음으로 報告를 드리면서 우리 南委員이 誤導된 그런 그 報道에 의해서 政治人의 生命과 같이 지켜야 될 政治的 生命에 혹시나 그 동안 상처가 간 일이 있다고 할 것같으면 이것 우리는 同僚委員으로서도 마음아프게 생각하는 바이고 또 이런 결론에 도달한 이 마당에 있어서 또 그렇게 그 報告를 했던 또 聲明을 냈던 그런 對象者들도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느끼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國民的 合意를 이룩해야 되고 보다 民主化를 이루어야 되고 보다 前進的인 歷史를 위해서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措置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제 個人的으로 부탁말씀과 또 호소의

그런 의견을 표현하면서 이와같은 與野가 合意를 이룩함으로써 인해서 單一案을 이룩하려고 하는 이 劇的인 妥結이 이룩되는데 있어서 양보의 양보 또 여러가지 깊은 理解의 理解를 거듭해 준 南載熙委員에게 同僚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決議된 報告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澤壽 宣布를 하겠습니다.

基本權 第18條 3項 「編輯과 編成의 獨立은 保障한다」 그러면 또.....

○崔炯佑委員 아까 그 외에 제가 議事進行 發言을 그대로 앞으로 與野幹事님 그리고 우리 野園의 李龍熙委員을 포함한 6人委員에게 全權을 맡기면 합니다.

○委員長 金澤壽 이제 崔委員 議事進行을 이렇게 한번 整理를 해보겠습니다.

勞働三權 選舉年齡 憲法前文 安保등 其他 未合意된 事項에 대해가지고는 6人에게 委任을 하되 그 6人의 構成은 不肖 小人을 포함을 해서 與園幹事 두분 野園幹事 두분外 李龍熙委員을 추가를 해서 6人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議事進行을 하신 崔炯佑委員한테 委員長으로서 正式으로 質問을 하겠습니다.

이 6人 委員에게 委任해 준 이제 제가 말씀 드린 事項에 대해서 授權委任이나 아니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동시에 그 授權委員會에서 決議된 事項에 대해가지고는 全體會議를 召集을 해서 報告로써 接受하지 거기에서 討論은 認定하지 아니한다 하는 條件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崔炯佑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께서 저에게 議事進行에 대해서 質問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깨끗하고 良心的이고 그리고 이 憲法을 만드는데 國民的인 合意의 意志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委員長과 우리 幹事님들 그리고 李龍熙委員도 나보다도 더 깨끗하고 良心的이고 國民的 合意에서 모든 것을 處理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國民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 라는 것을 충분히 認識하실 것이고 또 歷史上에 큰 過誤를 범할 그런 분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授權委任을 하고 꼭 그 決議事項에 대해서는 報告해 주시고 接受하기를 바랍니다.

○韓柄來委員 委員長님 말하는 安保가 몇條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조금……

○委員長 金澤壽 그것은 현재 條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韓柄來委員 그러면 全般的으로 다 새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金澤壽 아니지요. 몇條도 없고 여기에 써넣었으니까 얘기인데 그것은 6人 委員들한테 맡겨 주시면 씬이 나오겠지요.

○金澤壽委員 아니에요. 6人 委員한테 맡기는 데 여기 全體委員들이 6人 委員한테 무엇을 맡기는지도 모르고 맡겨 놓아요? 安保면 安保에 대해서 무슨 條項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라도 어느 정도 윤곽을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協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오래 時間을 消費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다가 맡기자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거기에다가 맡겨요?

○韓柄來委員 맡기는 문제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제도 안 가르쳐 주고……

○崔炳佑委員 本委員의 議事進行 發言에 있어서 與圈 野圈에 합의된 문제는 除外된 것입니다.

○委員長 金澤壽 그야 물론이지요.

宋元英委員 말씀하세요.

○宋元英委員 이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國會立場이나 또 使命으로 말씀드리면 될 수 있으면 빨리 憲法改正案을 끝내가지고 國民앞에 提示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對政府關係나 時局關係로 비무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합의가 다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섯분한테 맡긴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이고 黨이 審議過程을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中間에 報告도 받게 될 것이고 또 만일 막힌 일이 있으면 黨에 와서 報告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염려될 것이 없으니까 授權으로 해서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제가 贊成意見を 말씀드립니다.

○朴容萬委員 授權 6人委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요 言論關係는 既히 여기에서 妥結이 된 것이고 그런데 이 原則을 잊어버리는 안됩니다. 全體會議에서 합의안된 事項에 限해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똥단지같이 安保 워 어저고 하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全體會議에서 既히 다 合意를 보고 合意안된 方向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委員長께서는 분명히 勞動權 가운데에서 行動自律權에 대한 문제 選舉年齡問題 憲法前文 이 세箇에 대해가지고 6人 小委員會에다가 全權을 맡기는 것입니다.

安保云云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나올 餘地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委員長께서 그것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합니다.

○崔致煥委員 물론 여러 委員들께서 얘기하는 그런 論法에 의해서 이것이 議題로 採擇이 되나 안되나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게 제가 아까 듣기에는 우리가 審議가 끝난 소위 基本權小委에서 아무 異議없이 採擇이 된 71條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 憲法 71條에 內憂 外患 天災 地變이 있을 때 大統領이 내리는 소위 緊急財政處分 그것이 1項이고 2項에 가서는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限하여 大統領은 法律의 威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는 大統領緊急命令 이것을 좀 어떻게 強化해 볼 수 있는 길이 있나 해가지고 意見を 내겠다 하는 그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基本權小委員長도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무 異議가 없이 이것이 採擇이 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意見を 開陳하겠다 이것인데 이것을 심각하게 그렇게 무슨 條項에 變更을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推進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에 대한 意見を 그 당시에 參與안했던 委員으로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가 배경을 드린 全體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委員長 金澤壽 조금 제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權力小委 委員長이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金守漢委員 지난번 權力構造小委員會에서 審議 完了된 事項에 대해서 제가 저 자리에서 說明말씀을 드렸습니다.

權力構造小委員會는 다른 小委員會와 마찬가



지로 崔致煥委員을 비롯해서 南載熙委員 또 李炯鎬委員 여러 委員 모두 계셨습니다. 소위 與閣 野閣 全 委員이 滿場一致로 合意가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문제를 지금 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날 우리가 審議한 安保概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法律概念이 아닙니다.

安保라고 하는 것은 具體的으로 集約하면 現代的 의미에 있어서 國防입니다. 安保라는 것이 어떻게 法律概念입니까? 이것은 法律概念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까 이 문제는 權力構造에 있어서 大統領의 財政經濟處分權에 여러가지 전부 裝置가 다 있었어요. 거기에 異議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濫用 못하도록 그것도 裝置가 다 있었어요. 權力構造小委員會에서 合意가 다 된 것을 여기서 報告 다 되어서 아무 異議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것이 왜 異議없이 넘어간 部分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삼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적게는 權力構造小委員長을 無視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權力構造小委員會 審議에 參加했던 모든 委員들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語不成說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예요.

○委員長 金澤壽 그런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었던 오늘 議事日程의 順序로 할 적에 여기 한 토막에 분명히 여기에 적혀져 있으니까 委員長은 公正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하는 것은 委員 여러분들이 아시고 만약에…… 내 折衷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安保가 되었던 國防이 되었던 간에 무슨 얘기가 있다면 우리 小委 6人委員會에 와서 說明정도는 해바라 說明까지는 배제할 必要가 없지 않느냐 나머지 決定은 우리가 6人委員會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만 宿題만 남겨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버리지요.

○朴容萬委員 合意본 문제를 6人委員會에서 나와가지고 再論할 權限도 없고 再論할 必要도 없어요. 아무리 授權委員會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安保議題關係는 삭 罷버리세요.

○委員長 金澤壽 조금 제십시오. 李廷植委員부터 먼저 發言하세요.

○李廷植委員 安保에 관한 討議의 실마리에 대해서는 세 記憶으로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날이 며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李錫

濟委員께서 原稿를 가지고 읽으신 記憶이 있습니다. 그 때 지루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끝내고 合意보지 못한 事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자 해서 넘긴 것이 분명히 會議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具體的으로 어느 어느 대목에 대해서 李錫濟委員께서 또 이쪽 與黨圈에 가가지고 意見을 提示했는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留保된 事實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案件 네 個中에 세 個는 분명하지만 하나는 그때 그렇게 時間的으로 못하기 때문에 한번 繫留해 보자고 해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南載熙委員 제 기억도 李廷植委員 말씀과 비슷한데요 例를 들면 요건번에 李錫濟委員이 두 번인가 세 번 發言하시면서 문제를 提起했을 때 委員長이 速記錄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일단 넘어가지만 13 14 15日 全體討論을 다시 할 적에 李錫濟委員께서 意見を 開陳을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委員이 다 同意를 한다면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다 그 開陳의 기회를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委員長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6人授權小委員會에 出席시키시 意見의 開陳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論理가 一貫된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澤壽 李炯鎬委員 말씀하세요.

○李炯鎬委員 지금 南載熙委員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意見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 權力構造小委에서 다 討議된 것입니다. 아까 金守漢 權力構造小委員長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選舉年齡 또는 勞動三權 그리고 前文은 여기서 全體會議에서 전부 討議가 되었습니다. 討議가 되어가지고 얘기할 때로 다 하고……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지금 授權小委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安保問題도 여기에서 全體會議을 해가지고 충분히 討議해가지고 넘겨야지 여기에서 討議를 안하고 넘기는 것은 그것은 事理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安保問題를 넘기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일단 全體會議에서 討論해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澤壽 조금 諒解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會議을 한 發言記錄이 엄연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全體會議에서 분명히 의견을 말해서 여러분께서 贊意를 表해서 採擇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14 15 兩日間に 설사 合意가 된 事項이라도 全員이 合意되었을 적에는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討論의 機會는 한번 더준다는 記錄은 있습니다. 그 記錄은 엄연히 살아 있으니까 抹殺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委員會에서 採擇하고 안하고는…… 이런 意見이 있다면 그 記錄이 살아 있는데 오늘이 갔으니까 내일은 나와서 이야기를 못한다 하는 것은 公人이 아니다 여기에 起因을 해서 이것을 機會도 안준다 하는 것은…… 우리 委員會에 와서 說明을 하고 採擇하고 안하고는 다음 문제이고 우리 6人委員들이 여러분한테 授權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면 되고 또 아까 崔炯佑委員께서 좋은 말씀을 했어요 여섯사람의 人格을 믿고 넘겨준다 그것은 준엄한 鍼이라고 봅니다 여섯사람 당신네들한테 人格을 믿고 넘기니까 잘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되었으니까 李錫濟委員이 6人委員會에 와서 說明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說明을 하고 또 說明을 들어보니까…… 지금 6人委員들이 決定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負擔스러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金東英委員 發言하세요.

○金東英委員 安保問題에 대해서는 우리 國民들이 누구나 다 安保問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못지않게 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權力構造를 다룰 적에 문제가 事實上 權力構造委員會에서 合議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래서 與野 幹事會議을 한 일이 있습니다. 與野 幹事會議에서 比例代表制問題와 國會議員 間選問題 200名以上으로 한다는 이런 문제 등등을 議論할 적에 維政會에서 이 安保問題를 提起해가지고 우리 與野 幹事會議에서 이것이 논의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憲法特委 本會議에서 權力構造를 다루고 基本問題를 다룰 적에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安保問題를 記錄에 남기겠다고 해서 原稿를 써 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음으로 해서 이것을 記

錄에 분명히 얘기를 해서 記錄이 됐어요. 記錄을 보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누구 못지 않게 安保問題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크고 더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이 문제는 결정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論議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또 다시 여기에서 論議를 하고 하면 우리가 큰 課業을 마치는데 障礙가 된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安保問題는 이미 끝난 것으로 하고 지금 남은 문제가 實質的으로 우리가 合意에 도달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縮小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이 문제는 與黨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세요.

○委員長 金澤壽 金澤永委員 發言하세요.

○金澤永委員 그렇게 서로 양해가 되어서 넘어가면 더 이상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金東英委員께서 얘기하다시피 權力構造問題에 대해서 本委員도 그렇고 李必善委員도 그렇고 比例代表制問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은 넣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얘기했고 또 安保問題에 대해서도 지금 李錫濟委員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委員長이 지금 接受하고 小委員會에서 모두 그렇게 審議를 해서 가져온 것은 여기에서 接受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전부 끝난 것은 아니고 14 15일에 최종으로 결정하고 넘기는 과정에서 거론할 수도 있다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異論은 자꾸 비약시켜 나가면 比例代表制問題도 여기에서 다시 거론이 되어야 되겠다. 이 얘기에요.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前文關係하고 또 무엇 무엇하고 세가지만 그냥 授權小委員會에 넘긴다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느닷없이 安保問題니 뭐니 하면 아주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여러가지로 國民이 安保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安保야 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條文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異論을 전개하고 한다고 그러면 다른 문제도 다시 들어서 얘기를 해야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小委員會에 넘겨가지고 小委員會에서 授權해 가지고 審議해서 여기에 報告를 해 주는 이

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炯佑委員 委員長께서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은 野閣 與閣의 合意되지 않은 事項에 대해서 小委員會에서 授權을 맡아가시고 處理한다 하는 것은 한번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저는 委員長을 비롯해서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小委員會에 參與하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歷史意識에 의해서 處理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흔히들 安保를 主張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安保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시피 내가 安保를 위해서 國家와 國民과 더불어서 國防에 대해서 철저한 意識이 있다고 한다면 남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野閣에서 安保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異議를 提起한것은 委員長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도 그날 李錫濟委員께서 말씀한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문제의 內容을 記錄을 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하고 그것이 甲論乙駁이 되었을 때 李錫濟委員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委員이 贊成한다면 나는 이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나 歷史에 記錄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 所信을 여기에 披瀝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與閣에서 다 主張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議事進行發言으로서 이 歷史的인 憲法을 國民의 合意에 의해서 하루속히 만들어서 政治日程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또 이 時局에 우리들이 조그마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하루속히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議事進行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委員長께서 잘 아시다시피 選舉年齡問題 勞動三權 團體行動權問題 憲法前文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授權을 맡아주시고 아까 委員長께서 말씀하시는 李錫濟委員께서 말씀한 安保問題에 있어서는 아까 李錫濟委員을 그 문제는 6人小委員會에 불러서 의견을 聽取를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 案을 여기에서 꼭 插入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李必善委員 議事進行 發言주세요.

○委員長 金澤壽 議事進行입니까?

發言하십시오.

○李必善委員 安保問題는 議題로 우리가 授權을 하는데 委任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나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改憲審議過程의 節次問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節次過程에 지난번 李錫濟委員이 大體討論하는데 이 安保問題를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야기하겠다는 「애드발문」은 던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까 午前에 제가 말씀을렸지만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해서 完全 結論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讀會를 생략하고 지금 特別委任한 事項이니까 議事進行의 節次에 있어서는 일단 간략한 方法으로 定立을 했습니다.

그랬으니만치 節次上的 문제가 있습니까 安保에 대한 李錫濟委員의 提議는 衆論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節次上的 合理化를 위해서라도 일단 매듭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金守漢委員 委員長! 지금 문제의 불씨는 委員長께서 이것 이것을 맡겨다오.

그런데 그 議題중에 安保問題를 맡겨다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委員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날 여기에 李錫濟委員께서 會議錄을 보면 알지마는 金三龍이니 李舟河를 뵈 6·25때 바꾼 문제 무슨 어떻게 하는 문제 6·25戰史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했어요 그런 이야기지 具體的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憲法 第 몇條에 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고쳐다오 나는 異議가 있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러한 6·25戰爭史에 連結된 여러가지 이야기를 그때에 開陳을 하고 그 문제가 바로 議題하고 具體的인 事項으로 指摘이 안되니까 委員長께서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다음에 해주시오 이렇게 된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議題가 안된다. 그러니까 6人委員會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個人的으로 意見を 들어보는 것은 다른 委員도 意見を 들을 수 있으면 듣는 것이 좋은데 다만 會議錄에 記錄으로써 議題로써 承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 議題로써 承認받으면 具體的으로 議題를 集約해야

記  
누  
이  
에  
이  
것  
리  
을  
미  
로  
이  
야  
고  
  
남  
금  
에  
고  
  
니  
錫  
濟  
를  
야  
은  
는  
은  
  
例  
야  
  
면  
었  
진  
않  
지  
도  
다  
어  
울  
시  
小  
가  
이

지 아까 다른 委員 말씀처럼 討論해서 어느 爭點을 議題로써 이것은 어떻게 調整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막연하게 安保問題를 委任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金澤壽 朴燦鍾委員 發言하십시오.

○朴燦鍾委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議事進行 그러니까 節次와 議決結果는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엄격하다면 그 節次에 있어서 雅量을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記憶하기에는 李錫濟委員이 오늘 兩日中에 일어나는 문제된 非常事態 아래서의 大統領閣選條項을 그때 力說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 全體會議에서 議決을 보기로 제 記憶에는 오늘 李錫濟委員께서 그 주장을 再論하는때 그 再論에 대해서 滿場一致가 안되면 그 異議는 안받아 주도록 이런 條件으로 再論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안 계십니다. 안계시기 때문에 6人授權委員會에 와서 그 분이 얘기를 하는데 6人委員 全員이 贊成해야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結論은 구태여 제가 말씀 안드려도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안계시고 하니 이것을 가지고 曰可曰否하는 것은 좀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安保論은 안계시는 條件 또 계셨더라도 우리가 다 贊成해야 그분의 意見이 받아들여지는 條件 이런 同僚間에 雅量이라까 이런 것이 있고 또 進行의 便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議題라고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일단 6人小委員會에서 그 분에게 말할 기회는 賦與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澤壽 이렇게 提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委員長자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野團에도 古色이 燦爛합니다. 또 野團에도 古色이 있고 여기에 혼자서 이래 막고 저래 막고 하니까 골치가 아픈데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6人委員들이 필요에 따라서 李錫濟委員이 安保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찌 우리가 排除를 합니까? 들어보자 그러니 그 정도로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은 그렇게 定해가지고 6人委員會의 授權으로 하되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결정된 事項은 全體會議에 대한 報告로써 그치자 그 決定된 授權案에 대해서 討論은 있을 수가 없다.

異議없으시지요?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來日 아침부터 授權委員會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野團의 議員總會가 사전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서로 참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議員總會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政務委員會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來日 午後 2時에 6人授權小委員會를 召集해가지고 문제를 다루는데 이쯤 되었으니까 빨리 빨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내용있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來日 會議結果를 가지고 全體會議 召集날짜는 다시 通報해 드리겠습니다.

異議없습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長時間 많이 진지하게 討論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來日까지는 전부 다 授權委員로서는 다 끝나겠지요. 단 하루 來日 午後 2時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會議가 됩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19分 散會)

○出席委員

金澤壽	金裕璋	南載熙
尹在明	崔致煥	金世培
李炯鎬	李道煥	李錫濟
李承潤	李廷植	李鍾植
高在清	金東英	金守漢
朴容萬	朴一	朴海充
宋元英	李龍熙	李必善
蔡汶植	崔炯佑	韓柄來
金祿永	朴燦鍾	